[별표]

위 임 사 무 명(제2조 관련)

소관부서	위 임 사 무 명	단위 사무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납세지원과	1. 도세납세 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		「지방세징수법」 제5조	읍·면·동
징수과	1. 도세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	① 체납액 징수독려	「지방세기본법」 제5조부터 제6조	읍·면
		② 도세의 수납(금융결재원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수납에 한함)	「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」 제2조 제1항 「파주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3조	읍·면·동
하천관리과	1. 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		「하천법」 제75조 「경기도 사무위임 조례」 제2조	읍·면
	2. 하천의 감시	① 하천감시원의 임명 (소속 공무원 중 업무 관련 담당자 지정)과 그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조치	같은 법 제72조	읍·면
		②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	같은 법 제69조·제93조·제94조·제95조·제96조	읍·면
		③ 점용물 등의 제거,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및 보관·처리	같은 법 제69조	읍·면
농업정책과	1.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사무 중 다음의 권한	①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사업 신청· 접수	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	읍·면·동 (교하동, 금촌3동에 한함)
		② 경작실태 조사	같은 법 제14조제2항	
		③ 지급자격 심사	같은 법 제14조제2항	
		④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	같은 법 제14조제2항	
		⑤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및 공급	「농지법」 제21조	